

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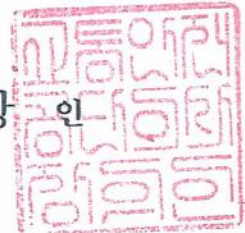
인증서 번호 : KL14 - 061

1. 종 류	타면조종형비행기	2. 등 록 부 호	HL-C200
3. 형 식	KR-030 Topaz	4. 발 동 기 형 식	Rotax 912UL
5. 제 작 번 호	30-04-10	6. 제 작 일 자	2013.04.23.
7. 안전성인증 종류	1종	8. 인 증 서 만 료 일	2015년07월08일까지
9. 제 작 자 주 소	ul. Puzaka 18, krosno, 38-400, Poland		
10. 제작자성명(명칭)	PPHU EKOLOT		
11. 키트 제작자성명(명칭)	PPHU EKOLOT		
12. 운 용 범 위	제한 사항 없음		
13. 비 고			

위의 경량항공기는 항공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,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.

2014 년 07 월 09 일

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



안전운항 및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강조 사항

-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는 항공법 제3조에 의한 항공기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**유자격 조종사만이 경량항공기를 조종하여야** 합니다.
- 경량항공기를 이용한 조종연습은 충분한 기량을 갖춘 교관조종사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야 하며 미숙련자의 무리한 단독비행을 지양하고 **조종연습생에 대한 교관조종사의 책임의식을 강화**토록 하기 바랍니다.
- 경량항공기의 조종사 교육시 이론적인 이해도와 조종능력 습득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여 미숙련 조종사가 비행능력 미흡으로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.
- **개인별 비행시간기록부**를 유지하기 바랍니다.
- 엔진 작동상태를 포함하는 **비행 전 확인점검**을 반드시 실시하고 **비행단계별 점검표 (Check List)**를 작성, 이행하기 바랍니다.
- 기체/엔진 사용시간, 정비내용을 포함하는 **탑재용항공일지**를 유지하여 경량항공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(교통안전공단 양식 배포)
-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**장착장비의 사용법**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비행하기 바랍니다.
- 항공 기상에 대한 확인 철저히 돌풍, 강풍, 시정불량 등 악 기상 상태에서 무리하게 비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.
-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이 심히 훼손되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정비를 실시하여 비행토록 하고 특히 **엔진이나 비행조종면 등 비행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품의 교환 또는 수리개조 시에는 반드시 수시검사를** 받아야 합니다.
- 경량항공기에 대한 식별표시를 관련 규정에 따라 날개 및 동체 등에 규격에 맞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경량항공기 소유자는 항공법 제3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**소유자 및 정치장 등의 변경**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에 **변경등록**을 하여야 합니다.
-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의7(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)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
(다음 장 계속)

“함께하는 청렴실천 미소 짓는 우리”

안전성인증검사 과정에서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및 문제제기를 원하시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(www.ts2020.kr) 고객센터
- 1차 :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(신풍비행장치검사소) 임석훈
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851-1번지 (전화 : 041)841-0092~3)
- 2차 :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신홍철
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-1 (전화 : 02)2037-6040)

교통안전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조리를 알게 되었거나,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
-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(www.ts2020.kr) 고객센터->부조리신고센터
- 425-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17 (고잔동 523번지) 교통안전공단 감사실
- 전화 : 031-481-0188

【이의제기 업무처리 흐름도】

